〈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워본에 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곳 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위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 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 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 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맷본부가 정보곳개서를 벼겻 등록하거나. 비 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30100206

UONG REER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3.03.13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01.16

www.yonggu.co.kr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라거스팟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라거스팟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 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 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 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시ㆍ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 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 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 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 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정검한 다음 참업에 임하 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호로 401-1, 1층, 2층 (종로5가)

대표전화: 1661-4227 가맹사업 담당: 1661-4227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Ⅲ.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 첨] : I.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설비

Ⅱ. 대표메뉴 권장가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 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 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 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 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회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회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 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용구비어 외	1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호로 40-1, 1층, 2층 (종로5가)				
주식회사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 등록 일	대표자	대	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라거스팟	2021.11.24.		2021.11.29.	정태훈	1	661-4227	-
	법인등록번호 131		111-0652882	사업자등록번호 529-8		36-0219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0 1 1	서울특별시 종로	구 동호로 40-1, 1	흥, 2층 (종로5가)	
대표이사	정태훈	용구비어 외 1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태훈	1661-4227	-	
		0.7.1.0	서울특별시 종로	구 동호로 40-1, 1 8	층, 2층 (종로5가)	
사내이사	박지영	용구비어 외 1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71 171	T 1.	정태훈	1661-422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펑키 탭하우스	라거스팟	2021.11.30.	서울특별시 강남대로55길 9-7 (서초동, 201호)	정태훈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주식회사 와이비 운용사업부	용구비어	2024.04.03.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 113, 6층 (번동, 파스칼진빌딩)	조허정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용구비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용구비어	
상 호	용구비어 OO점	
	anied ®	서비스표 출원번호: 41-2013-0005997 등록번호: 제 41-0275703호
상표(서비스표)	YONG SBEER	서비스표 출원번호: 41-2013-0040236 등록번호 : 41-0299281호
	#ONG S	서비스표 출원번호: 41-2013-0044115 등록번호 : 41-0299302호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9,514	-	9,514	-	-485	-485
2022년	14	14,664	-14,650	5,500	-24,162	-24,164
2023년	618	67,625	-67,006	3,500	-51,955	-52,356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5.-1) 표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1744		-1 7101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정태훈	대표이사	2021.11.24. ~현재	주식회사 라거스팟 대표이사	사업총괄	
관련 임원	박지영	사내이사	2021.11.24. ~현재	주식회사 라거스팟 사내이사	경영지원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	수(명)	~ 직원수(명)	
시습	상근	비상근	(경선구(경 <i>)</i>	
2023년 12월 31일	2	-	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식회사 라거스팟	가맹사업 경영	2021.12 ~현재	라거스팟 (등록번호:20210363) 라는 영업표지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일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enied ®		2013.02.19 출원 2013.12.17 등록	출원 제41-2013-0005997호 등록 제41-0275703호	정태훈	2033.12.17

YONG DEER	계약내용에 따라 상표사용	2013.10.22 출원 2014.09.16 등록	정태 훈	2024.09.16
VONG ()	및 대가수수	2013.11.18 출원 2014.09.16 등록	정태훈	2024.09.16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상표권자로부터 상표사용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승낙받았습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용구비어 가맹사업 현황

1. 용구비어 시작한 날 : 2013년 02월 19일

2. 용구비어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한비아	용구비어	조허정	2013.02. ~ 2013.0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1, 3층 310호 (서초동,원효빌딩)
주식회사 와이비에프씨	용구비어	조허정	2013.07. ~ 2017.12.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1, 2층 205호 (서초동,원효빌딩)
주식회사 와이비 운용사업부	용구비어	조허정	2017.12. ~ 2021.05.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1, 407호 (서초동,원효빌딩)
주식회사 와이비 운용사업부	용구비어	조허정	2021.05. ~ 2024.04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13, 6층 2호 (번동, 파스칼진빌딩)
주식회사 라거스팟	용구비어	정태훈	2024.04. ~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호로 401-1, 1층,2층(종로5가)

3. 용구비어 업종

영업표지	업종		
용구비어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주점	호프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용구비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11 - 1
7104	2	021.12.3	1.	2	022.12.3	1.	2	023.12.3	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3	43	-	28	28	-	-	-	-
서울	7	7	-	4	4	-	-	-	-
부산	3	3	-	3	3	-	-	-	-
대구	2	2	-	1	1	-	-	-	-
인천	1	1	-	1	1	-	-	-	-
광주	2	2	-	2	2	-	-	-	-
대전	-	-	-	-	-	-	-	-	-
울산	1	1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4	4	-	3	3	-	-	-	-
강원	3	3	-	1	1	-	-	-	-
충북	3	3	-	2	2	-	-	-	-
충남	-	-	-	-	-	-	-	-	-
전북	1	1	-	1	1	-	-	-	-
전남	2	2	-	1	1	-	-	-	-
경북	8	8	-	6	6	-	-	-	-
경남	6	6	-	3	3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용구비어 가맹점 수

(단위 :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57	-	4	10	4	43
2022	43	-	3	12	-	28
2023	28	-	-	28	ı	-

6. 용구비어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용구비어] 외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 은 다음과 같습니다.

7 🛭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구분	정오/이름	영합표시	등록번호	입공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식회사 라거스팟	라거스팟	20210363	주점	1/-	2/-	2/-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7	가맹점사업자	의 연간 평균	균 매출액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연간 평균	균 매출액		평균 ქ(상한)	연간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	-	ı	1	-	-	-	
서울	-	-	ı	-	-	-	-	
부산	-	ı	ı	ı	-	1	-	
대구	-	-	-	-	-	-	-	
인천	-	-	-	-	-	-	-	
광주	-	-	-	-	-	-	-	
대전	-	-	-	-	-	-	-	
울산	-	-	-	=	-	-	-	
세종	-	-	-	-	-	-	-	
경기	-	-	-	=	-	-	-	
강원	-	-	-	-	-	-	-	
충북	-	-	-	-	-	-	-	
충남	-	-	-	-	-	-	-	
전북	-	-	-	-	-	-	-	
전남	-	-	-	-	-	-	-	
경북	-	-	-	=	-	-	-	
경남	-	1	1	1	-	1	-	
제주	-	-	-	-	-	-	-	

8. 용구비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용구비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용구비어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를 운영하지 아니합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 [용구비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본 정보공개서 [V-9-1)]을 참고하십시오.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 개점 후 최초 가맹금을 수령하는 관계로, 가맹금 예치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 사항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용구비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외장공사, 전기증설, 냉난방설치, 철거, 닥트, 상하수도 인입, 정화조, 가스설치, 소방 설비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 금액
최초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 계	7,700				
가입비	5,500	가맹점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	
교육비	2,200	개점 이후	바라 월두 반환될 수 있음	교육 개시 이후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 계	-			
(현금)보증금	해당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 계	7,700
가 입 비	5,500
교 육 비	2,200
(현금)보증금 (부가세 없음)	었음

- * 본사는 영업개시 이후에 계약 잔금을 완납하는 형태로 예치가맹금에 대한 가맹점사업 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제도에 관련된 증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5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9.5m² 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59,290	3,952			
간판	주식회사 라거스팟	5,390	360	설치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전면,돌출 등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주식회사 라거스팟	26,400	1,76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1일 이전	공사 전 계약취소	목공,도장 등 내장 공사
주방설비	주식회사 라거스팟	13,464	898	물품 공급 1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냉동냉장고, 싱크, 그릇류, 조리기구 등
가구	주식회사 라거스팟	3,036	202	물품 공급 1일 이전		의자
POS시스템	주식회사 라거스팟	2,200	146	물품 공급 1일 이전		POS
기타	주식회사 라거스팟	4,400	293	물품 공급 1일 이전		인쇄물, 유니폼, 소품 등

최초 공급 상품 협력업체	4,400	293	물품 공급 1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초도 물품비 초도 식자재비
-------------------------	-------	-----	----------------	------------	----------------------

- ☞ 위 표의 금액은 49.58㎡(15평)기준이며,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점포의 구조. 공사여건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별도비용 : 외장공사, 철거, 가스가설, 전기승압, 통신설비, 외부상하수도공사, 소방설비공사, 화장실개보수공사, 어닝설치공사, 닥트공사 등 기본계약서외 추가사항은 점포별 처한 환경이 달라 일괄적용이 어려우므로 점포시설시 해당비용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점포개발팀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전화:1661-4227)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보건증 소지자 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용구비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물품의 상세내역은 첨부 I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천원)		-	-	100%
납부일		-	-	오픈일
비고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주식회사 라거스팟	220	다음 월 5일	ı	후불형식 으로 반환불가	
판촉분담금	주식회사 라거스팟	협의 후 분담	통지일로부터 2주일 이내	판 촉 행사 미시행	판 촉 행사 시행	가맹점사업자 개별판촉가능
교육훈련비	주식회사 라거스팟	산정 후 통보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의 미실시	교육 실시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주식회사 라거스팟	협의 후 결정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미시공	시공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채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합의 결정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 용	주식회사 라거스팟	협의 후 결정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미시공	시공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시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주식회사 라거스팟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P33 참조
지연이자	주식회사 라거스팟	연18%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월 계속기맹금 등 (기맹계약과

			지급하는 날까지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 지급 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리뉴얼 비용	주식회사 라거스팟	협의 후 결정	협의 후 별도통보	미시공	시공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 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기준 :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급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폼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위생, 각종 설비관리, 원·부자재관리 등에 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는 월1회 매출상황과 회계원장 등 을 보고 하도록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별도로 소정의 갱시가맹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

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화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화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 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 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용구비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식회사 라 거스팟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 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 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

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 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 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최소3개월 이전이어야 가능)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그 외에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제공받거나 대여 받은 매뉴얼, 문서, 도면, 도서 등 관계서류 등도 반화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 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용구비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 맹본 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 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용구비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 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용구비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이 없으나, 추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상대방을 지정하여 원·부재료 등의

공급을 하며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당사가 [용구비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u>경</u> 제적 이익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 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별첨2,3참고 (대표메뉴)	당사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명성 유지를 위하여 왼쪽에 기재된 품목만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하여 신상품을 출시하게 되므로 본 정보공개서 에서 표시하는 품목 외에도 추가로 판매품목을 제한 할 수 있음.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정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청Ⅱ와 같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절인 집중 함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맥주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용구비어, 라거스팟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 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기맹점사업 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시역 면성(만)을 서면 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 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 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도로사정의 변경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영업지역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 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 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 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용 구비어'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 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국내 온라인·오프라'	인 판매 매출액 비중	<u> </u>
Ç	견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	2023	-	ı	-	1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용구비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개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 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 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 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 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triangleright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triangleright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 락하지 아니한 경우		
\triangleright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triangleright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7	네6조
\triangleright	용구비어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triangleright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사유	관련 계약조문
▷ 귀하가 제5조[계약기간] 제5항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귀하가 제8조[가맹비 및 로열티] 등 금전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 귀하가 제10조[교육 및 훈련]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귀하가 제12조[운영매뉴얼 준수 및 감독·시정 요구권] 각 항을 위반하거나 甲의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귀하가 제17조[영업양도 등]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 귀하가 제20조[상품의 조달과 관리 및 대금의 지불]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1항
▷ 귀하가 제21조[지도지침준수 및 취급상품 제한]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 귀하에게 제23조[상품공급 및 영업지원의 중단]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귀하가 제28조[乙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시 키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귀하가 제 6조의 2[영업중단조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 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 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제외한다.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 리기 어려운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이 개발이나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영업지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어서 영업지역변경 가능함	제4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 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 부 통지 → 양도인, 앙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무이 다사(시티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현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 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양도절차 준용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불가능	-		
업무위탁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지역 내에서 귀하가 용구비어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주류 및 안주류를 판매하는 업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업을 허가하는 방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당사SV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용구비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5:00 ~ 05:00 (14시간)	월 1회 휴무	문의: 당사SV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제한 없음	대체근무 가능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별첨Ⅲ)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식회사 라거스팟과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용구비어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6	교 서건	투	부담비율	비다 거리	ш¬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대중매체 광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모 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I ()[테트 해시: I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없음	전액부담	-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 조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 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 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팜플렛, 전단지, 쿠폰 등의 제작은 용구비어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당사에 그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양 당사자 중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계약 위반, 일방적해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일금 삼십만원(₩300,000) X 계약기간 잔여월수 [제6조 4항 계약의 해지 조항]
- 2)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면적당(본 계약에 명시한 가맹점면적) 1,500원씩[매장면적(m²)X지체일수X1,500원]으로 산출한 금액을 그 지연 손해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3항 계약의 종료 및 원상복구 조항]
- 3)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계약서 제27조 ①,②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계약 기간 내 제3항(경업금지 의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 금 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 4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의무 조항]

- 4)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별도의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2항]
- 5)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상 가맹본부에게 부담하는 금전 지급 채무를 지체한 경우 지급기일 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18%의 지연이자를 가맹본부에게 지급한다.[제29조 의 2 지연이자 조항]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49.58m²기준 /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12p~14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의 현황문서 제공	D-44~4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8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6~24(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3(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2~5(18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최초 가맹금 수령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 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 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 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1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여캠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 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해에 기반 업의 통원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아테라 광병	이정말이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 는 검토환경에 선: 20% 이정말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	등 공사비용을 증 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뷔 → 90일 이내에	로부터 3년 이나에 기맹본부의 책임없 는 사유로 계약이 중 료(계약이 해자영업 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 레하는 부금액은 지 급하지 아니하거나	

일로부터 90일 이
내, 총 부담액이
30%, 2차 : 1차 지
급일로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이
30%, 3차 : 2차 지
급일로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이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판촉인원 파견 및 전단지, 기념품 등의 판촉비용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판촉인원 수 및 판촉비용 차등 지원	오픈일로부터 3일간	300만원 한도	
판촉장려금	매월 가맹점 매입금액의 5% 이내 범위에서 장려금 지원	직전 2개월 평균 매입 금액이 1000만원 이상 기맹계약 위반사항이 없을 것 *지원조건 미충족시 지원하지 않음	기맹계약기간	직전 2개월 평균 매입금액이 1000~2000만원 : 매입금액의 2%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 매입금액의 3% 3000만원 초과시 : 매입금액의 5%	익월 상품대 금 차감방 식 <u>으로</u> 지원
판촉지원	매월 전체 가맹점의 제품 주문량의 1~5%를 가맹점의 판촉물로 지원	없음 (전 가맹점 해당)	기맹계약기간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가맹점에 필요한 판매용집기를 계약간동안무상대여	없음 (전 가맹점 해당)	기맹계약기간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반품지원	시즌행사(그리스마스, 연말면시 기정의 날등시 출시되는 제품류 중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 반품지원	시즌행사 제품류 중 반품지원 품목 지정상품에 한함	시즌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기명점 메일금액기 80% 인정하여 지원금액 산정	

마일리지	구매회원에 대한 2~5% 마일리지 적립	없음 (전 가맹점 해당)	기맹계약기간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가맹점 편화일 라이 지급
CRM	우수고객에 대한	없음	분기별 1회	소요되는 비용	
CRIVI	고객 유입 DM발송	(전 가맹점 해당)	군기필 I외	전액 당사 부담	
테스터	고객이사용할수있는	없음	신제품	소요되는 비용	
네스니	테스터공급 지원	(전 가맹점 해당)	출시 시	전액 당사 부담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 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기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 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 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 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S/V팀 (1588-7709)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기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기맹 본부는 경영지도계획사(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 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기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일 이 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 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기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S/V팀 (1588-7709)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용구비어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 지 않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용구비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 - 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후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용구비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최 소 시 간	비용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점주교육 - 3일 -본사교육 : 개점 전 1일	49.58m² (15PY)	2,200	크 게이 !! 이스
교육	-점포교육 : 개점 전 1일 개업 후 1일	66.11 m² (20PY)	2,200	최초 계약 시 이수
정기 교육	1일	정산 후 고지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비정기 교육	1일	정산 후 고지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3조에 따라 당사가 별도로 지정한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의 개점을 할 수 없으며, 기한내 당사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_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

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 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I]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Ⅱ] 대표메뉴 권장가격(주류)

구분	메 뉴 명	수 량	중 량	산 지	판 매 가
	소주	1			4,000
	카스/테라/클라우드	1			4,000
	카프리/버드와이져	1			4,000
	호가든/코로나/크루져	1			5,500
	하이네켄/산미구엘	1			6,000
	칭따오(大)/아사히/KGB	1			7,000
주류	블랑	1			7,500
	기네스	1			8,000
	코로나리타	1			9,900
	크루져리타	1			9,900
	KGB리타	1			9,900
	크림생맥주	1	485cc		3,500
	크림생맥주	1	1700сс		12,000
	술빙	1			9,900
	술거트	1			6,500
칵테일/ 음료	칵테일맥주	1			4,000
	칵테일소주	1			5,900
	토닉워터	1			2,000
	음료	1			2,000

[별첨Ⅲ] 대표메뉴 권장가격(안주류)

구분	메 뉴 명	수 량	중 량	산 지	판 매 가
	감자스틱	1			5,900
	허니갈릭프라이즈	1			7,900
	치즈스틱	1			7,900
	치즈볼	1			7,900
	모짜렐라찰핫도그	1			7,900
	치즈치즈소시지	1			8,900
	마약소시지	1			8,900
	블랙쉬림프	1			9,900
	크림치즈랑군	1			9,900
	윙윙치킨	1			9,900
	갈릭똥집후라이드	1			9,900
	맵까스	1			9,900
	리얼새우튀김	1			9,900
	등심꿔바로우	1			10,900
	코코넛새우튀김	1			10,900
	크랩&칩스	1			11,900
	오징어튀김	1			11,900
	바삭모듬감자	1			11,900
안주류	통살양념치킨	1			12,900
	버팔로윙&봉	1			16,900
	오리지널치즈나쵸	1			5,900
	쥐포튀김	1			6,900
	노가리	1			7,900
	BIG쥐포구이	1			7,900
	촉촉오징어	1			10,900
	찰떡궁합마른안주	1			11,900
	즉석버터오징어	1			12,900
	먹기쉬운먹태	1			12,900
	아이스황도	1			5,900
	청양어묵탕	1			7,900
	파인애플샤베트	1			7,900
	용구떡김	1			8,900
	조개탕	1			8,900
	수박샤베트	1			10,900
	얼큰해물탕	1			10,900
	왕만두김치찌개	1			12,900
	새뱅이탕(칼국수면)	1			15,900

[별첨IV] 원·부재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수령증

(가맹희망자 보관용)

본인은 **주식회사 라거스팟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며, 수령한 정보공개서는 숙고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한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용도 외의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가맹사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출, 복사,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가맹희망자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가맹본부	상호 및 브랜드		주식회사 라거스팟	YONG DEER
	주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13, 6층 2호 (번동, 파스칼진빌딩)	
	사업자등록번호		502-86-36309	

정보공개서 제공 일자 : 20 . . .

가맹희망자 : _____(인) 또는 서명

가맹본부 : <u>주식회사 라거스팟 (인)</u>

※ 정보공개서 수령증은 2부 작성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각 1부씩 보관한다.

정보공개서 수령증

(가맹본부 보관용)

본인은 주식회사 라거스팟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며, 수령한 정보공 개서는 숙고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한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용도 외의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가맹사업에 관 한 중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출, 복사,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 니다

	성	명		
가맹희망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가맹본부	상호 및 브랜드		주식회사 라거스팟	YONG PBEER SMALL BEER CAPE
	주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13, 6층 2호 (번동, 파스칼진빌딩)	
	사업자등록번호		502-86-36309	

정보공개서 제공 일자 : 20 . . .

가맹희망자 : _____(인) 또는 서명

가맹본부 : <u>주식회사 라거스팟 (인)</u>

※ 정보공개서 수령증은 2부 작성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각 1부씩 보관한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